

#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다문화 크리에이터 창작지원 운영 지침

제정 2021. 05. 24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①이 지침은 경기콘텐츠진흥원(이하 ‘재단’이라 한다)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다문화 크리에이터 창작지원(이하 ‘다문화’라 한다)의 육성 교육과정 및 창작지원, 학사운영,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운영목표)** ①다문화는 도내 다문화인의 웹·모바일 1인 크리에이터 육성교육 및 창작지원하여 미디어 능력 제고를 위한 다문화 크리에이터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.

②다문화 크리에이터 육성교육 및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 활동기회를 제공한다.

③도내 교육장의 적극적 활용과 수강생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지원한다.

**제3조(운영방침)** ①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문화의 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과정별(교육, 제작 멘토링(창작지원), 후속지원) 체계적 육성
2. 1인 크리에이터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육성

**제4조(교육장)** 다문화는 재단이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, 도내 교육장에서 운영한다.

## 제 2 장 수강생 선발

**제5조(수강생선발)** ① 다문화 크리에이터 수강생 과정별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.

②수강생은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.

### 제 3 장 자격 및 전형

**제6조(전형방법)** ①다문화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.

1. 지원서
2. 운영채널 정보
3. 지원자격 증빙서류

②수강생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진행하며, 제출 서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전화 또는 대면 면접을 진행한다.

③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지원 및 전형절차의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.

**제7조(등록절차)** ①수강이 확정된 자는 소정의 교육보증금(이하 ‘보증금’이라 한다)을 납부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 장애인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의 경우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등록 포기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, 예비합격자 순으로 선정한다.

### 제 4 장 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

**제8조(수강등록)** 선정된 수강생은 지정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절차는 보증금 납부 및 구비서류 제출 후 완료된다.

**제9조(보증금)** 다문화는 수강생의 참여도를 보장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금 제도를 운영한다.

①보증금에 관한 세부사항(납부연기, 감면 등)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정한다.

②보증금의 책정은 재단 기관장이 승인하고, 신입생 모집 시 이를 공고 한다.

③수강생은 교육 프로그램 등록 시 과정별 책정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보증금 납부)** ①다문화 수강생은 합격 통보 이후 보증금을 재단의 지정기간 이내 계좌이체로 완납하여야 한다.

②납부 2회 안내 시에도 보증금을 미납할 경우 다문화 입학허가가 취소되며, 이는 예비합격 차순위자에게 양도된다.

③장애인 및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금

을 면제한다.

**제11조(보증금 반환)** ①보증금은 수강생이 개강일 전일까지 교육 의사를 철회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.

②등록 후 총 수업일수의 1/2 경과 전 수강생이 교육 의사를 철회할 경우 보증금의 1/2을 반환한다.

③등록 후 총 수업일수의 1/2 경과 후에는 보증금의 반환이 불가하다.

④전항 보증금 반환기준은 온·오프라인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⑤보증금이 과오 납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.

**제12조(환급금)** ① 온·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전체 수업시간 70% 이상 이수자의 경우 수료자로 인정하며, 해당 수강생에게는 보증금의 전액을 환급한다.

②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경우 보증금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
## 제 5 장 결석 및 학사경고

**제13조(결석)** ①온·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생이 교육 당일 출석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업 시작 시간의 1시간 이후까지 출석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.

②단, 불가피한 상황(질병, 재해, 재난, 국방, 직무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,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7일 안에 관련 자료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온·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수업 참여시간을 수료기준으로 한다. 수강생이 온·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한 시간만큼 이수시간으로 인정된다. 단, 온·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전항을 준용한다.

**제14조(학사경고)** ①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를 받으며, 교육 중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한다. 제적 시 보증금은 환급하지 않는다.

1. 학습태도 불량 등으로 타 교육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 자
2. 교육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(수업자료의 영리적 배포 및 공유 등)
3. 교육장비 및 기자재 절취, 파손 또는 허가 없이 장비를 해체한 자

②학사경고 여부는 다문화 지침을 근거로 하여 재단 담당부서 및 본부장 승인 하에 결정한다.

## 제 6 장 기자재 사용 및 저작권 관리

제15조(기자재 사용준칙) 교육실습 및 프로젝트 제작을 위해 기자재 사용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기자재 사용은 수강생 본인에 한하며, 사전 관리자 허가를 통해 배정한다.
2. 기자재 사용일정을 준수해야 한다.
3. 기자재의 개인용도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임의로 기자재를 분리 및 조립할 수 없다. 교육장비 및 기자재 절취 또는 허가 없이 장비를 해체하여 장비에 손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장비를 배정받은 수강생 본인이 이를 변상한다.
4. 기자재 사용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와 그 일정을 조정한다.
5. 수강생 개인이나 팀의 과실로 인한 기자재 손·망실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 사용자 또는 팀이 변상하여야 한다.
6. 위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사용일정을 어길 경우 일정기간 해당자의 사용권한을 박탈하고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6조(저작권의 귀속 등) ①다문화 재학 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수강생에게 귀속된다.

②단, 경기도 및 진흥원이 홍보, 공익목적의 전시회 참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텐츠의 사용이 가능하다.

## 제 7 장 보 칙

제17조(학칙 개정절차)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 담당부서 및 본부장 심의 이후 재단 기관장이 확정한다.

## 부 칙

이 학칙은 기관장의 결재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